

PL법의 해석과 법적측면에서의 업계대응

김 제 환

(고려대 법대 교수, 변호사)

PL법의 해석과 법적측면에서의 업계대응

김 제 완
고려대 법대 교수, 변호사

I. 머리말

지난 2002. 7. 1.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기업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축산식품산업 업계에 있어서 PL은 어떠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製造物責任法 概觀

1. 製造物 責任의 意義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缺陷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 3조 참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제조업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정 전에는 법원으로서 민법상 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온 것인데, 이와 같은 민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함에 관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른바 귀책사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함이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했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법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여 왔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제조업자로서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2. 適用對象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상이 아니지만, 가공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특수하게 양식된 농수산물 등이다. 가공된 우유나 통조림과 같이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가공한 제품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된다. 반면 축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채 단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 포장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한지 또는 어느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그 경계가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향후 판례를 통하여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그 과정상 危險性的의 增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3. 責任의 主體

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製造業者이다(법제 3조 제 1항).

제조업자에 관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법제 2조 제 3호 가목).

반면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미국과는 달리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2차적인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법제 3조 제 2항).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자는 자신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피해자측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유통업이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대형유통업체가 추천한 제품, 유통업체의 자체기획상품(Private Brand 제품)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밝혀졌으나 무자력이거나 파산, 소멸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에 관하여는 현행법하에서는 表示製造業者(법제 2조 제 3호 나목)로서의 판매업자의 책임 인정 여부 및 민법에 의한 과실책임으로서의 판매업자의 책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시제조업자란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 등으로 표시하였거나 그와 같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표시제조업자는 비록 자신이 제조·가공·수입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缺陷의 種類

1) 缺陷의 意義

제조물책임의 요건이 되는 제조물의 결함이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법제 2조 제 2호).

우리 제조물책임법상으로는 대표적인 결함의 종류로서 製造上の缺陷(manufacturing defects), 設計上の缺陷(design defects), 表示上の缺陷(warning defects ;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s)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製造上の缺陷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특정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대로 제조되지 않음으로서 특정 상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과는 달리 제조상의 결함은 상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상품 또는 특정 공장 내지 특정기간에 제조된 상품에 한하여 결함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통적인 의미의 제조물결함이며, 품질관리를 충분히 함으로서 예방될 수 있는 결함이다.

3) 設計上の缺陷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설계단계 내지 제품기획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된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달리 설계상의 결함은 해당 상품 전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

설계상의 결함이 문제된 경우, 기업으로서는 그 제품이 설계 개발단계에서 각종안전기준, 규칙 등을 고려하였고 이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상품의 개발 설계 단계에서 국가나 협회 등에 의해 강제 또는 권고되고 있는 안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4) 表示上の缺陷

표시상의 결함이란 부득이하게 위험성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하여 그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를 소비자 측에서 방지 회피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조자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분야가 표시상의 결함 문제이다.

위험성이나 사용방법,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표시하여야 할 내용 및 정도,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바 없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사건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표시상의 결함사건이다.

5. 企業間 去來와 製造物責任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제조물결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다만,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대등한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 특별한 효력을 한가지 인정하는데,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는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기로 하는 특약(이른바 면책약관)에 관하여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

한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법제 6조). 이는 면책약관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하는 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Ⅲ. 製造物責任 對應方案

1. PLP와 PLD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은 크게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예방대책), PS(Product Safety ; 제품안전대책) 및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 제조물책임방어·소송대책) 등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제조물책임사고 발생전에는 PLP, 발생 후에는 PLD가 필요한 것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기업의 PL소송 대응에 관하여 논할 때에는 PLD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식적인 사고는 적절하지 못하다. PLP와 PLD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PLD를 논함에 있어서 PLP단계에 있어서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LP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PLD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도 일단 PLP와 PLD단계로 분류하여 기업의 대응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製造物責任豫防對策(PLP) 段階

1) 製造上의 缺陷

제조상의 결함은 완벽한 품질관리로서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화된 경우에는 과연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된 경우의 방어대책은 결국 제조과정상 설계대로 제조되었다는 점,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측의 사유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제조업체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비자가 오남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든가, 제조업자가 아닌 유통업자 또는 소비자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올바른 보관·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표시상의 결함을 예방한다는 점뿐 아니라, 제조상의 결함의 부존재를 밝히는 데에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에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면책되거나 최소한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참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設計上의 缺陷

설계상의 결함이 문제되어 소가 제기된 경우의 방어책은 근본적으로 그 설계 자체가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제품이 설계 개발단계에서 각종

안전기준, 규칙 등을 고려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상품의 개발 설계단계에서 국가나 협회 나아가 국제 기구나 학회 등에 의해 강제 또는 권고되고 있는 안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1) 法令上의 基準遵守의 效力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한 것 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기만 하면 결함이 있더라도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의 취지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맞추느라고 어쩔 수 없이 결함이 야기된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법령상의 기준을 맞춘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령상의 기준은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령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의 안정성이 거래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리콜(Recall)과 製造物責任法

다음에 PL과 리콜(recall)제도와와의 관계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도 실무자들 간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PL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도로서 결함있는 제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인 반면,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결함있는 제품을 사고 발생 전에 이를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측면의 제도라는 오해이다. 이 명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리콜제도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의 귀속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법 제 4조 제 2항에 의하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리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설사 면책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 4조 제 1항 제 2호, 즉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자는 면책된다. 이른바 개발위험(development risk)의 항변이다. 그러나 만일 제조업자로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당시의 기술수준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 상황에서 생각할 때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대표적인 것이 리콜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발위험의 항변은 실무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일법에서 판례상 인정되던 제조업자의 이른바 製造物觀察義務가 법제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조업자로서는 제조 당시에만 소비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후에도 적극적인 의무와 추가적인 지시 경고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이 유통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상품의 결함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함은 물론이고 동종업체의 제품안전성 향상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유통 후에도 자신의 회사 또는 경쟁업체에 의한 새 기술의 개발로 기존의 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위험의 경고조치, upgrade된 부품 또는 제품으로의 교환 권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재고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조치와 리콜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제품별로 특성이 있기는 하나, 고객에 대한 연락처의 확보와 애프터서비스 내지 고객불만수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에 관하여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오사용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수준을 설정한 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심사나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나 신뢰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表示上の 缺陷

표시상의 결함이란 부득이하게 위험성이 존재하는 제품에 대하여 그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를 소비자측에서 방지·회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조자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경고해야 할 위험이나 설명해야 할 지시가 아예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이들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경고나 지시의 표시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분야가 표시상의 결함 문제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면책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분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 반면, 설계상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 피해자로서는 흔히 표시상의 과실을 문제삼을 수 있는데, 표시의 방법과 정도 등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품의 포장이나 취급설명서에 위험의 정도, 위험의 종류,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1) 廣告의 管理

유의하여야 할 문제로서 광고선전이나 카달로그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광고가 다소 과장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고객의 책임이라고 보아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과장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표시광고법 등에서 과장광고에 대해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관하여도 제조물책임을 염두에 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營業組織의 管理

다음에, 판매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제조업자로서 충분한 표시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조직에서는 영업실적을 우위에 둔다는 속성상 이를 간과하거나 생략한 채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제조부서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이 허사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파트나 판매조직 등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자료제공과 교육을 통해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輸出品의 경우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수출품의 경우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다민족국가인 미국의 경우, 우리 정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고객에 의한 誤使用(product misuse)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상상 가능한 경우를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으로서 면책 가능성이 우선 제품의 용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소비자측에서 오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조업체에게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입을 하는 국가의 문화와 경제수준, 새로운 상품의 경우 제품의 용도 등에 관한 이해도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하여, 소비자의 수준에서 오사용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製造物責任防禦對策(PLD) 段階

1) PL紛爭處理節次 概要

(1) 紛爭處理節次の 種類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는 화해, 조정, 중재, 재판상 화해,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본다.

① 和解

화해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 상호 양보함으로서 분쟁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합의’가 그것이다. 다른 방안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비교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유리하나, 당사자가 직접 맞부딪혀야 하므로 합의의 도출이나 합리적인 금액의 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액의 피해사례 등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調停

조정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화해계약과 같으나, 조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해계약과 다르다. 조정에는 任意調停과 強制調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데, 임의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당시 합의를 한 경우이고, 강제조정은 결정당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조정안을 결정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간에 의의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사안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이를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위자료 등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한 측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판과정중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적어도 당해 심급에서는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고, 항소하여 계속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 한 제조업자로서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안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다른 유사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업의 법무 실무자로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조정이나 화해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다른 사건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仲裁

중재는 법원이 아닌 기구에 의해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강제력을 가지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같으나 그 주체가 법원이 아닌 제 3의 기구라는 점이 판결과 다르다.

④ 裁判外 紛爭解決機構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제조업자는 자체피해배상기구에서 그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재판외 분쟁해결기구(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DR은 그 설치근거법령에 따라 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중재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화해계약의 체결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실무자로서는 그 성격을 명확히 이해한 후 대처하여야 한다.

(2) 顧問辯護士制度, 訴訟費用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회사별로 고문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두는 것이다. 고문변호사를 둘 경우 사고 발생 전 자문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그 회사와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해 주지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경우 고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 소정의 월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월 소정 시간 내의 자문에 대해 추가 자문료를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되 일반적인 보수보다 감액하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문변호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은 명망이 있는 변호사보다는 실무자들과 호흡이 잘 맞고 실무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실무자의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임 이후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송의 방향의 설정, 입증자료의 준비, 조정 등의 경우 불복여부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의뢰인측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규정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은 변호사보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정의 금액만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납부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을 하는 실익이 있으나,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소송비용확정을 하여도 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3) 保險會社와의 關係

소송에 있어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서는 일단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고, 그 판결 결과 제조업자가 패소한 경우, 제조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판결결과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자가 소송수행을 잘못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사안에서 패소하였다든가 과실상계 등을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 보험금은 감액되고, 그 손해는 제조업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가 제기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도 제조업자로서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를 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될 것이다. 교통사고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사고의 경우도 같은 경향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로서는 사고발생시 응소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호사단을 조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國外에서의 PL訴訟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수출업체로서는 해외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소가 제기될 경우,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현지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하거나 보험회사나 협회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해외에서의 소송에 관하여 기업의 실무자로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에서의 소 제기가 있을 경우 적극 응소하여야 하며, 자신의 기업이 소송상 당사자가 아니라든가 재판권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함부로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직접 피고로 되지 아니하고 일종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한 미국의 판매업자가 미국법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를 제기당한 경우, 미국의 판매업자는 일종의 소송고지제도인 vouching in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제조업체

를 vouchee로 하여 이미 제기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내 제조업체가 미국의 판매업자의 패소를 막지 못하면 판결의 결과는 이후 미국판매업자가 국내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후소에서 구속을 가져 판매업자가 국내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피고인 미국 판매업자가 국내 제조업자를 직접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third party action의 경우에는 국내 제조업자도 당사자의 하나로 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판결의 효력과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몇가지 쟁점이 있기는 하나, 기업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보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경우 특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에 관해 유의하여야 한다. 각 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사건에 있어서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벌적 배상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피고가 무보하고 터무니없는 행위를 한 경우(reckless or outrageous conduct)”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징벌적배상의 경우 국내보험에 의해 부보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綜合的 PL對策

1) PL담당팀의 운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으로서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이다. 제조파트와 영업파트 그리고 고객불만처리파트에서 중구난방으로 피해고객을 대하고 사건에 관해 언급할 경우, 그 과정에서 유출되는 자료나 정보, 실무자들의 태도 등은 후에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측에 매우 불리한 증거나 정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많은 인력이 분쟁에 휘말려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소환, 형사사건 피소 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기존의 고객불만처리팀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문서의 작성 보관 및 PLP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PL담당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서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외국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제조물책임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까지는 최소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회차원에서의 대응기구의 필요성

개별 기업의 창구단일화와 함께 동종업계의 창구단일화도 협회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 여러 업체에 의해 공급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는 이른

바 산업책임(enterprise liability)이라 하여 시장점유비율에 따라 각 제조업체들이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책임의 분담에 관한 기업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신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연구자료와 객관적 감정 의견 등이 필요한데, 이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회차원에서 자체 감정기구를 운영하거나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둘 필요가 있다.

IV. 畜産食品産業에 있어서의 PL의 特殊性

1. 缺陷의 特殊性

식품에 있어서는 주로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사용한 원료가 부패한 경우, 제조과정상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포장에 불완전하여 보관 유통과정중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었던 경우, 포장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식품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물질이 아닌 본래의 성분(ingredient)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결함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가공한 닭고기에 뼈조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뼈조각이 들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뼈조각이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뼈조각은 이물질이 아니고 닭고기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결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되는 것이다. 방부제가 포함된 식품을 결함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방부제 자체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특정 방부제에 관하여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였을 경우에는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판례에서는 식품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손해를 야기한 성분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그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결함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合理的期待可能性을 결함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성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표시·경고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적용례 및 시효문제

제조물책임법상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제조물의 공급이 있는 때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져 있다. 그런데 어떠한 식품의 경우 예컨대 방부제와 같이 신체에 장기간 누적됨으로 인해 뒤늦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 전부터 공급이 있었던 사안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부칙상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시행 전에 사용이 종료된 경우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시행 전후에 걸쳐 사용된 경우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시행 전에 유통되다가 법시행 후에 소비된 제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하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보자면 법시행 이후에 소비된 것이니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이라 함은 “유통에 놓든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이미 과거에 시장에 넘겨진 물건에 대해 그 물건이 법시행 이후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3. 수입품의 경우

수입품에 관하여는 우리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업자가 제조자로서 책임을 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외의 수출업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는 것이 차후 소송과정상의 입증문제는 물론 패소시 구상권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4. 산업책임문제

성분이 같은 다른 업체의 식품이 공급되고, 결함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관하여 산업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 PL법의 해석과 법적 측면에서의 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판례와 이론이 형성되어가는 관계이므로, 기업의 실무자와 법조인, 학자들간의 자료의 공유와 연구 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합리적이고 불편부당하게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으로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 피해갈 수 없는 변화된 기업환경이라는 분명한 인식이다.